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2.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모범업소의 지정은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도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, 위생등급 지정은 식품접객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,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는 위생 관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바,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47조의2 및 제89조제3항)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7조의2의 제목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및 집단급식소(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“식품접객업소등”이라 한다)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식품접객영업자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식품접객영업자는”을 “식품접객영업자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식품접객영업자가”를 “식품접객영업자등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식품접객영업자에게”를 “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에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한다.

제89조제3항제7호의2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의2
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7조의2(<u>식품접객업소의</u> 위생등급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.</u>	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제47조의2(<u>식품접객업소등의</u> 위생등급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및 집단급식소(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“식품접객업소등”이라 한다)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식품접객영업자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</u> -----

② 식품의약품안전
처장은 제1항에 따
른 식품접객업소의
위생상태 평가 및
위생등급 지정에
필요한 기준 및 방
법 등을 정하여 고
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④ 위생등급을 지
정받은 식품접객영
업자는 그 위생등
급을 표시하여야
하며, 광고할 수 있
다.

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
을 지정한 날부터
2년으로 한다. 다
만, 총리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그
기간을 연장할 수
있다.

⑤ -----

3년-----.

-----.

-----.

② -----

---식품접객업소등
의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식품접객영
업자등은-----

-----.

⑤ (개정안과 같음)

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식품의약품안전
처장, 시·도지사 또
는 시장·군수·구청

⑥ (현행과 같음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(현행과 같음)

⑥ _____

-----식품접객영업
자등이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⑦ _____

-----식품접객영
업자등에게-----

⑧ _____

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<u>식품접객업소에</u> 대 하여 제22조에 따 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 ⑨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 기금을 같은 조 제 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른 <u>식품접객업소의</u> 위생등급 지정 사 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⑩ · ⑪ (생 략) 제89조(식품진흥기금)	⑨ (현행과 같음) ⑩ · ⑪ (현행과 같 음) 제89조(식품진흥기금)	----- ----- ---<u>식품접객업소등</u> <u>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⑨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<u>식품접객업소등</u> <u>의</u>----- ----- -----. ⑩ · ⑪ (현행과 같 음) 제89조(식품진흥기금)
---	--	--

①・② (생략)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~ 7. (생략) 7의2. 제47조의2에 따른 <u>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</u> 8. (생략) ④ (생략)	(현행과 같음)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	①・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----- -----<u>식품접객업소의</u>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
---	---	--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62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17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김 윤 · 장종태
임미애 · 송옥주 · 김우영
윤후덕 · 용혜인 · 이연희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·검사·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

대하려는 것임(안 제47조 및 제47조의2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모범업소 지정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위생 관련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집단급식소를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47조의2 및 제89조제3항)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를 삭제한다.

제47조의2의 제목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및 집단급식소(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“식품접객업소등”이라 한다)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식품접객영업자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식품접객영업자는”을 “식품접객영업자등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식품접객영업자가”를 “식품접객영업자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식품접객영업자에게”를 “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에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한다.

제89조제3항제7호의2 중 “식품접객업소의”를 “식품접객업소등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47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 ①</u>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</u>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총리령으로</u> <u>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</u> <u>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</u> <u>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</u> <u>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또</u> <u>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</u> <u>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</u>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</u> <u>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</u> <u>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</u> <u>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</u> <u>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</u> <u>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제89조</u> <u>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</u> <u>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</u> <u>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</u> <u>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</u> <u>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</u> <u>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</u> <u>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) ① -----

-----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및 집단급식소(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“식품접객업소등”이라 한다)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식품접객영업자등”이라 한다)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-----
-----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, 광고할 수 있다.

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

② -----
-----식품접객업소등의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식품
접객영업자등은-----

-----.

⑤ -----
-----3년-----
-----.

-----.

⑥ -----

-----식품접객영업자등이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
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
다.

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
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
2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
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
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

⑨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
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
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
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
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
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
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
있다.

⑩ · ⑪ (생 략)

제89조(식품진흥기금) ① · ② (생
략)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
에 사용한다.

1. ~ 7. (생 략)

7의2.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

-----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-----

-----.

⑧ -----

-----식품접객업소등에-----

-----.

⑨ -----

-----식품접객업소등의-----

-----.

⑩ · ⑪ (현행과 같음)

제89조(식품진흥기금) ① · ② (현
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-----식품접

<u>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</u> <u>업 지원</u> 8. (생 략) ④ (생 략)	<u>객업소등의</u> 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